

「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5일, 남진삼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남진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, 제설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유류비 등의 지원책의 마련으로 봉사자를 보호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사기를 증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(안 제3조 ~ 제4조)
- 2) 제설장비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(안 제5조 ~ 제6조)
- 3)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보험가입 및 지원(안 제7조 ~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에서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- 제설장비의 정의,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하고,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고 공제 및 보험 가입, 유류비 및 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제설 외 공익과 관련된 작업 등에 관리자 허락을 받아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‘조례’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